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028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5년 08월 11일
4. 회부일자 : 2025년 08월 14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조례안의 개요

- 우리시 조례 내 어려운 용어,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 나.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 변경)에 따른 부서명 정비
- 다. 그 밖의 경미한 오기 정정
- 라. 어려운 용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생략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I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현행화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일본어 투의 어려운 용어를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됨.

2. 일괄 개정 방식 및 조례안의 일괄 개정 사항

- 동 조례안이 사용하고 있는 일괄 개정 또는 일괄 정비 방식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조직개편, 용어순화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개정이 필요하거나, 해당 조례들이 규정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다르나 개정 대상이 유사한 복수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안을 통해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임.
- 이러한 일괄 개정 방식은 개별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입법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¹⁾에서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인용 조문과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서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어식 용어로 지정되어 정비가 권고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올바른 말로 순화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 903개²⁾ 중 63개(조문 84건)를 일괄

1)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A조례를 개정하면서 A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 B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방식과 ②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A조례와 B조례를 같이 본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일괄개정조례)이 있음(법제처(2022),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391.).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세부 정비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제명을 현행화하는 조문 11건(조례 10개), 조직개편 등에 따라 부서명칭을 정비하는 조문 8건(조례 6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순화하는 조문 50건(조례 42개), 그 외에 경미한 오기를 정정하는 조문 15건(조례 9개)임. [참고자료]

< 정비유형별 세부 사례 >

정비유형	세부 사례
인용조문 및 제명 현행화(11건)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8건)	◦ 경제정책실장 ⇒ 경제실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여성가족실장
어려운 용어 순화(50건)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외(15건)	◦ 경미한 오기 정정

- 동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현행화하여 그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어려운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조직개편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고³⁾, 법령 및 조례 개정⁴⁾에 따른 인용 조문이 현행화되지 못한 조례⁴⁾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2) 서울시 조례와 규칙 등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에 따르면 조례 903개, 규칙 237개, 훈령 34개, 예규 12개 등이 등록되어 있음.

3)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2024년 7월 1일 경제정책실을 경제실로, 여성가족정책실을 여성가족실로 개편하였음.

4)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해야 하나 누락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개정해야 하나 누락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있음.

형식적인 일괄 개정을 지양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자치법규 정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통해 2006년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일본어식 용어로 지정해 정비를 권고하고 있으나⁵⁾, 서울시는 조례 제·개정시 여전히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향후 조례 및 규칙 등의 자치법규 입안 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입법조사관	연락처
신현두	2180-8055

5)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법령을 한글화하는 한편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고치며,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장 표현을 정리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바꿈으로써 입법 의도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참고자료]

< 정비대상 조례와 조문 >

조항 번호	정비대상 조례명	해당 조례 조항	현행	개정
제2조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0조1항	민관기관	민간기관
제2조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4조제3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제9조제2항	경제정책실장	경제실장
제4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조례 제11조제2항	조례 제11조제3항
제5조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제3항제 1호	다목	나목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제1항제 3호	별표 1 제5호가목	별표 1 제10호가목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	주택실 건축기획과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제8조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제 6호	방지하는	방치하는
제8조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항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실장
제8조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9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3조	정보시스템과장	정보시스템과
제9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10조제2항	컴퓨터화일	컴퓨터 파일
제9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10조제3항	컴퓨터화일	컴퓨터 파일
제9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별지 제2의2호서식	컴퓨터화일	컴퓨터 파일
제10조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5조제1항 제7호	공개대상기관에서 징하는	공개대상기관에서 정하는
제11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별표 2 5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 주택은
제12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령 제79조	시행령 제77조
제13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재정기획관	규제혁신기획관

조항 번호	정비대상 조례명	해당 조례 조항	현행	개정
제13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평가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
제14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7조	법 제20조의2제3항	법 제20조의2제4항
제15조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장	제2장 리버버스 운영 및 지원	제2장 한강버스 운영 및 지원
제15조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제4호	리버버스	한강버스
제15조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리버버스	한강버스
제15조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5호	리버버스	한강버스
제16조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제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7조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창의행정담당관	조직담당관
제17조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창의행정담당관	조직담당관
제17조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8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6조제2항	창의행정담당관	조직담당관
제19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종로구 세종로 1-68번지	종로구 세종대로 172
제20조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제1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1조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4조제2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2조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2조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19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3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9조제3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4조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9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5조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9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6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5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항 번호	정비대상 조례명	해당 조례 조항	현행	개정
제27조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8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9조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0조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1조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2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2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7조제3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3조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9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4조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6조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5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7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5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8조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5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9조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0조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5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1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9조제3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2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2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3조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제24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4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7조제5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5조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3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항 번호	정비대상 조례명	해당 조례 조항	현행	개정
제47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9조의4제4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8조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1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9조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7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0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1조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2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3조의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2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3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3조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4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제7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4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제13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5조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6조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6조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6조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7조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제16조제3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8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9조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0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19조제4항제1호	제19조제5항제1호가목
제61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5조제1항제 4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62조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제12조제6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제63조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4조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